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8. 3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8.19.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8.22.

다. 상정일자 : 제206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16.8.3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선희

가. 제안이유

동 조례안은 한시정원으로 운영 중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시설을 총괄 관리·운영할 시설장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5급 정원을 59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고, 6급 이하 계를 1,311명에서 1,310명으로 감원 (안 별표 3)

○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5급 1명의 한시정원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 (부칙)

3.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은모)

○ 동 조례안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에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존속기한을 2018. 6. 30.까지 연장함에 따라 2017. 8. 15.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준공 전 시설물 사전 준비 및 준공이후 시설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도서관장 겸임 시설장 5급 1명의 한시정원도 2018. 6. 30. 로 연장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 3 중 5급을 59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6급 이하를 1,311명에서 1,310명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 3 중 5급 및 6급 이하 계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현 행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생 략)					
5급	59	34		9	16
6급 이하 계	1,311	1,311			
(생 략)					

개 정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현행과 같음)					
5급	60	35		9	16
6급 이하 계	1,310	1,310			
(현행과 같음)					

나. 부칙 제2조(한시정원) 일반직 정원 중 5급 1명의 한시정원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2016. 8. 4 ~ 8. 10.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주민의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에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존속기한을 2018. 6. 30.까지 연장함에 따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5급 1명의 한시정원도 2018. 6. 30. 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별 기준인건비 내에서 동 조례 "안 별표 3"의 5급 정원을 59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고, 6급 이하 계를 1,311명에서 1,310명으로 감원하고자 동(同) 조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는 연면적 20,229㎡【도서관(7,385㎡), 청소년교육센터(4,952㎡), 근린생활시설(4,087㎡), 공영주차장(4,087㎡)이며, 도서관 규모에 따른 도서관장의 직위를 보면 마포 중앙도서관은 7,385㎡로 마포구립 서강도서관(6급 관장) 1,146㎡보다는 훨씬 크고 서울도서관(4급 관장) 18,711㎡보다는 작은 중간 규모로 도서관 외에 청소년교육센터, 공영주차장 및 임대상가 등 전체 시설물 관리(3개 팀, 45명 정도)에 필요한 도서관장 및 시설장을 겸임하려면 5급 상당 직위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명을 줄이는 정원조정에 따른 예산을 검토한 바, 2016년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통보액은 1,107억 8,859만 9천원이고 마포구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1,037억 3,195만 5천원으로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 마포구 기준인건비 편성액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은 2017. 8. 15.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가 건축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 준비 및 준공 후 시설물 관리와 향후 조직 운영에 필요한 도서관장 겸임 시설장 선임을 위한 정원을 확보하고자 정원 조정을 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